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34호 2017. 9. 8.(금)

【조 례】

제1129호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
제1130호 공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1131호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1132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1133호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41
제1134호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1135호 공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52
제1136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55
제1137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84
제1138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0
제1139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제1140호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114
제1141호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제1142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3
제1298호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27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미디어담당관 ☎ 840-2052)

【규 칙】

제525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32
제526호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148
제527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70
제528호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177

【훈 령】

제267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팀 배치 규정 일부개정규칙 178

【예 규】

【공 고】

제2017-1545호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81
제2017-1549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4
제2017-1554호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17
제2017-1559호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23
제2017-1573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28

【고 시】

제2017-154호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고시 242
제2017-155호 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고시 247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
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조례 제1129호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주민자치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가 협조하거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

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

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써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

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용자가 저소득층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수강료의 수입·지출 내역은 연 2회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관리하되,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그 내역을 해당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위원장은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사용료등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자치단체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

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 등)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공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1월마지막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동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

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의 자치센터의 기능을 직접 수행 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의 이장·통장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출된 후보자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분야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

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까지 연임 할 수 있다.

⑥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⑦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체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1월 마지막 날까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모든 사항에 관해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달의 소통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촉해제) ①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없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원 등이 위촉 해제되어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위원 등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지원)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2.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3. 전국 및 도 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4.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또는 전국 및 도 단위 행사 참가
5.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주민자치협의회

제25조(설치) 시장은 자치센터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협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각 읍·면·동의 모든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원은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임원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4명(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한다),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을 두고,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회장·부회장·감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는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8조(협의회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국외 교류·교육 및 연수 사업
2.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등
3.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행사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참여 및 봉사활동
5.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9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사임) 협의회 위원은 제20조제1항에 따라서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위원직에서 위촉 해제 된 경우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1조(회의) ① 협의회 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두 달에 한번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회의록) 협의회 사무국장은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위원 임기의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원장 연임 횟수의 특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당시에 위원장인 경우에는 제17조의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조례 제1130호

공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리·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
기 위해 설치하는 리·통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해 및 고정사항”을 “이해관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예비군운영”을 “재난방재, 민방위대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 읍·면·동장, 이·통장”을 “그 밖의 읍장·면장·동장, 이장·통장”으로 한다.

리·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통장,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을 “마을 총회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선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 등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를 “위원”으로, “하며”를 “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이 전출 및 사고 등으로 물러나는 경우에는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장)”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매회계 연도말 이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마을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읍·면·동장”을 각각 “읍장·면장·동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리·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2조(기능) <u>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주민의 <u>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u> 3. ~ 5. (생략) 6. 리·통 <u>예비군운영</u> 협조에 관한 사항 7. <u>기타 읍·면·동장, 이·통장이 부의한 사항</u> <p>제3조(구성) ① <u>위원회는 이·통장,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 ③ (생략)</p> <p>④ <u>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감</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리·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각 마을별 리·통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능) <u>리·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이해관계</u> ----- 3. ~ 5. (현행과 같음) 6. ---- <u>재난방재, 민방위대 운영</u> ---- 7. <u>그 밖의 읍장·면장·동장, 이장·통장</u>----- <p>제3조(구성) ① ---- <u>마을 총회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u></p>

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⑤ (생략)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해제 되는 경우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② (생략)

제8조(감사위원) ① (생략)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매 회계 연도말 이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

다.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

----- 하되, -----
-----.

② 위원이 전출 및 사고 등으로 물러나는 경우에는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감사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마을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당한다.

② (생략)

제10조(서기) ①·② (생략)

<신설>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범위에서 사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서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서기는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① -----
----- 읍장·면장·동장-----.

② -----

----- 읍장·면장·동장-----
-----.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조례 제1131호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 1항 중 “업무수행에 되는”을 “업무수행에 소요되는”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이·통장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1. 읍·면·동 공부의 열람
2.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3. 교육·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차량지원

② 시장은 이·통장의 복무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비
2. 사무용품 구입비
3. 국내·국외 연수 및 워크숍 참가비
4.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5.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실비변상) ① ----- <u>업무수행에 소요되는</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재정지원) ①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p> <p>② 이·통장에게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상해보험가입, 사무용품지원, 국내선진지견학 및 워크숍, 한마음체육대회, 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비용</u>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지원) ① 시장은 이·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읍·면·동 공부의 열람 2.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3. 교육·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차량지원 <p>② 시장은 이·통장의 복무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해보험 가입비 2. 사무용품 구입비 3. 국내·국외 연수 및 워크숍 참가비 4.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5.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비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조례 제1132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속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복무선언)”을 “(복무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하는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다음 각호의 1”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기관”을 “해당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본직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무자의 본직 기관”을 “근무자의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 무규정」(대통령령)”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를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면직된”을 “해직된”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따른다.”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을 “아니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당해 연도의”를 “해당 연도의”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당해연도의”를 “해당 연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참·조퇴”를 “지각·조퇴”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조퇴”를 “지각·조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으로”를 “감염병으로”로 한다.

제22조를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삭제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단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업에 출석하는 경우에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공무원은 자녀가 군(軍)에 입영하는 날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가. 재해·재난으로 본인 및 그 직계존속이 피해를 입은 공무원

나. 재해·재난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

다. 재해·재난 구호활동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라. 시책 또는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3번에 걸쳐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

다.

제24조의2 중 “장(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이”를 “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특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지방공무원</u>----- ----- -----.</p>
<p>제2조(복무선언)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③ (생략)</p>	<p>제2조(복무선서) ①공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하는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u><삭 제></u></p> <p style="margin-left: 20px;">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p>	<p>제3조(책임완수) ----- <u>시민</u> ----- ----- ----- ----- -----.</p>
<p>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p>	<p>제3조의2(비밀엄수) ----- ----- <u>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다른 사람</u>----- -----</p>

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에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기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공무원) ①-----

----- 해당 -----

-.

②-----

----- 해당 -----
소속기관-----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겸임근무) ①-----

----- 소속기관의 장(「지방

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② (생략)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② (생략)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근무자의 소속기관-----
-----.

제10조(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시장-----
-----.

제12조(복장 등) ①·② (현행과 같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따른다.

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3. (생략)

③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

음)

③ _____
-----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_____

_____. _____

-----.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3. (현행과 같음)

③ _____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각 1일을 가산한다.

1. 2. (생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략)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

1. 2.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아니하도록,-----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당 연도의-----

-----.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연도의-----

-----.

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당해연도휴직기간)/12월 × 당해연도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생략)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전염병으로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③ _____

지각·조퇴 -----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

-----.

----- 지각·조퇴 -----

-----.

1. (현행과 같음)

2. 감염병으로 -----

②·③ (생략)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접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
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
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
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
조의3 단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
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
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
업에 출석하는 경우에 수업휴가
를 받을 수 있다.

3. 공무원은 자녀가 군(軍)에 입영
하는 날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가. 재해·재난으로 본인 및 그 직계존속이 피해를 입은 공무원

나. 재해·재난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

다. 재해·재난 구호활동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라. 시책 또는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3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③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삭 제>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삭 제>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시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 제>

⑥ ~ ⑨ 삭 제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연가를 얻을 수 있다.

<삭 제>

⑪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

<삭 제>

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공무원이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 제>

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남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삭 제>

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2회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을 따른다.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제24조의2(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휴가의 허가) 소속기관의 장(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이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삭 제>

제24조의2(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휴가의 허가) -----장이 -----

-----.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조례 제1133호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5조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공주시 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신청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차단, 사이버음란물 차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주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공주시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이하 “시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주시에서 위임한 각종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관을 포함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7.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제4호에서 제6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기술적 안전조치”란 제7호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6조에서 제8조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내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시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시 관내 신청 가정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청정지역조성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조성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또는 중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6조(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을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제7조(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 ①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예방을 위해 제2항의 사항이 실행되도록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 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가정에서 학습전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컴퓨터에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해 청소년 개인별로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에 이용제한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게임 이용시간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게임·인터넷중독 검사결과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정신보건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이버음란물 차단)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다음 각 호의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 및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5.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이버음란물 차단 조치
- 제9조(안내문구의 표시)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제10조(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시장은 제4조제3호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 안전조치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계별 적용례) 제4조제2호의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내 전체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며, 5년 동안 보급률을 해마다 5% 이상 증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
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조례 제1134호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야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
야별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안전 분야

2. 자살예방 분야
3. 교통안전 분야
4. 고령자안전 분야
5. 어린이여성청소년안전 분야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업무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위원은”을 “실무위원회는”으로, “호에 해당하는 사람”를 “호의 사람중에서 분야별로 각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회의소집 등)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0조의 실무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실무위원회) 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u>분야별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u>를 둘 수 있다.</p> <p><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p> <p>② <u>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도시 업무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선출한다.</u></p> <p>③ <u>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u></p> <p>1. <u>공주경찰서·공주소방서·공주교육지원청의 안전관련 업무 부서장</u></p> <p><신 설></p> <p>2. (생략)</p>	<p>제10조(실무위원회) ① ----- -----<u>다</u> <u>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u> ----- -----.</p> <p>1. <u>재난안전 분야</u> 2. <u>자살예방 분야</u> 3. <u>교통안전 분야</u> 4. <u>고령자안전 분야</u> 5. <u>어린이여성청소년안전 분야</u></p> <p>② <u>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업무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u></p> <p>③ <u>실무위원회는 -- 호의 사람중에서 분야별로 각 10명 이내--.</u></p> <p>1. <u>안전도시 사업과 관련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u></p> <p>2. <u>안전도시 사업과 관련있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제10조의2(회의소집 등) ① 실무위원회 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조례 제1135호

공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주시가 출자하여 공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사업으로 개발된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출자의 한도) ①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6조(정관) 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사업의 내용
4.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5.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공고 방법
7. 발기인의 인적사항

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조례 제1136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제80조제3항, 제85조 제1항 및 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3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법 제41조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하여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

2. 당사자 법인의 임원 및 직원 등

제11조(조정 기간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결서(이하 “조정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통지서(이하 “분쟁조정통지서”라 한다)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통지서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분쟁조정통지서가 거부된 경우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_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

가·참고인 및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요구 통지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양쪽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위원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양쪽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한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신청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5.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 사항이 아닌 경우
6. 조정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7.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8. 제17조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및 중지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반려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 효력)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통지서를 받고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고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통지서를 받고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조정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참석한 2명이상의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률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필요한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용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한 비용
4.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드는 비용
5.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3장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주시보 또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2.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보수
4. 어린이놀이터(파고라 포함)의 보수
5.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보수
6.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른 동별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비용
7. 장애인 편의시설과 재난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외 공동시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방법)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제18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 시 업무담당국장 및 관계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신청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부서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하고, 서기는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4장 공동주택의 감사

제26조(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된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요청 동의서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감사 제외 대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감사 실시의 결정) 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른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감사 계획 수립)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감사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감사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감사 계획 통보) ①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

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③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검토 수당을 지급한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조사·검토 :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조사·검토 : 30만원

제32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 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33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감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주된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결과 통지 및 처리) ① 시장은 감사 결과를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고발·수사의뢰 :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태료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3. 시정명령 :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원상복구 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지도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현장지도 : 단순한 착오이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 공개를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5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8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하고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40조(수당 등) 시 공동주택 관련 각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비밀준수) 각 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를 폐지
한다.

②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해진 신
청,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
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결서					
조정건명					
신청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의결내용					
<p>「공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p>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통지서			
조정건명			
신청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의결내용			
<p>공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p>			

출 석 요 구 서			
조정건명			
신 청 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석대상자	성 명	주 소	
출석시간	년 월 일 (:)		
출석장소			
<p>「공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을 요구하오니 공주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p>			
<p>※유의사항</p> <p>1.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p>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반려통지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반려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공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반려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p>			

조 정 회 의 록

확 인 자 :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작 성 자 : 간 사	서명

조 정 대 상

- 단 지 명 :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조정신청내용 :

회 의 개 요

- 장소 및 일시 :
- 참 석 위 원 :

토 의 사 항

-
-
-
-
-

의 결 사 항

기타사항은 별지작성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 공동주택	공동주택명		동 수	
	위 치		세 대 수	
	사용승인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전체 회의 의결일)	

신청 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소요액(천원)	산출근거	비고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직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 2. 사업계획서(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해당공동주택관리규약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경우)
접수처	공주시청 허가과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9호 서식)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9서식]

요청인 연명부

단 지 명 :

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별지 제10호서식]

감사 요청 동의서

단 지 명		연번: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동의 사항	<input type="checkbox"/> 요청인 대표	
	<input type="checkbox"/> 감사 대상	
	<input type="checkbox"/> 감사 요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및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감사 결과 보고서

1. 대상단지 : (감사분야 :)
2. 감사기간 :
3. 감사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총평

년 월 일

감사반장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조례 제1137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
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5조에 따라 하수 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일시 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을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③ 제2항의 따른 공사비는 개산액을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

리 내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 부서와의 협의로서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배수구역 이외의 지역(하수관로 사용지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2의 업종별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의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의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0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

를 대항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 업무담당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③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하수배출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시 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다시 산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사용) 시장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옥외 개인하수도의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5 및 별표 5-1과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주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

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산정·부과하며, 인·허가 시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없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나. 납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8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

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

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생활오수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에 개발계획 인구를 곱하여 산정한 수량과 해당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과 비교하여 많은 수량으로 한다. 다만, 타행위의 개발계획 인구가 없을 시는 도시기본계획상의 가구당 인구지표에 의해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
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
라 분뇨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
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행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분뇨수집·운
반업자가 폐업하고자 할 경우 법 제56조의2제1항 및 영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영업이익금과
보유 차량에 대한 예상이익금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지급절차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여 공주

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공고한다.

③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의 지급 이후 분뇨수집·운반 양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

제21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서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과 같이 산정하여 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2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5호의 물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4조(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입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제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업종별 / 구분	사용량(m ³ /월)	m ³ 당 사용료(원)	비 고
가 정 용	1m ³ 이상 ~ 20m ³ 이하	180	
	21m ³ 이상 ~ 30m ³ 이하	230	
	31m ³ 이상	360	
일 반 용	1m ³ 이상 ~ 100m ³ 이하	220	
	101m ³ 이상 ~ 300m ³ 이하	330	
	301m ³ 이상	470	

[별표 2]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제8조제2항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 m ³ 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경로당.노인회관.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5. 기숙사 6.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노인정.음수대.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 등에 대한 급수
일반용	1.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하수 2.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입주 전까지)

-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3]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제8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 × 시간당 폐수 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 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농도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계산 예>

※ 위 1번의 경우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별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6조제1항 관련)

(오수발생량 : m³/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A+B)	증가량 (D)	적용방법	증기량 (E)	총오수량 (F=C+E)	부과량 (G)	적용방법	
									증기량 (B)
기본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7	7	-	(B)<10 미부과	6	9	-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12	15	12	(B)+(E)<10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2	9	-	(B)+(E)>10 초과량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7	14	4	(E)>10 전체부과
		11	16	11	(B)>10 전체부과	11	18	11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8	-	(A)+(B)<10 미부과	4	15	-	(A)+(B)+(E)<10 미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7	18	-	(A)+(B)+(E)>10 초과량부과
		11	16	11	(B)>10 전체부과	11	22	11	(E)>10 전체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범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	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6	18	-	(A)+(B)+(E)>10 초과량부과
		7	17	-	(B)<10 미부과	12	24	12	(E)>10 전체부과
		11	21	11	(B)>10 전체부과	1	17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6	22	-	(A)+(B)+(E)>10 초과량부과
		7	17	-	(B)<10 미부과	12	28	12	(E)>10 전체부과
		11	21	11	(B)>10 전체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6	19	-	(A)+(B)+(E)>10 초과량부과
		7	17	-	(B)<10 미부과	12	25	12	(E)>10 전체부과
		11	21	11	(B)>10 전체부과	2	19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6	23	3	(A)+(B)+(E)>10 초과량부과

- 주) 1. 신축 또는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변상의 용도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5의 2]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6조제1항 관련)

부과대상 건축물	기존 오수량 (m ³ /일)	오수량 증가 사유	오수 증가량 (m ³ /일)	부과대상 오수량 (m ³ /일)
기존 건축물	5	용도변경 등	10	10
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	5	용도변경 등	10	15

※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때 증가되는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조례시행일을 기준으로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포함토록 하여 신축 당시부터 10m³/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관련)

$$\text{○ } m^3\text{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ext{▷ } \alph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별표 7]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 2017년 조례 공포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부 과 기 준		부 과 요 금	
		요금구분	수수료
기본	1,000 l 당	수거비 처리비	15,600원 0원
		계	15,600원
초과	100 l 당	수거비 처리비	1,400원 0원
		계	1,400원

○ 2018. 1. 31. ~ 2018. 12. 31.

부 과 기 준		부 과 요 금	
		요금구분	수수료
기본	1,000 l 당	수거비 처리비	18,200원 0원
		계	18,200원
초과	100 l 당	수거비 처리비	1,600원 0원
		계	1,600원

○ 2019년 이후

부 과 기 준		부 과 요 금	
		요금구분	수수료
기본	1,000 ℓ 당	수거비 처리비	20,600원 0원
		계	20,600원
초과	100 ℓ 당	수거비 처리비	1,800원 0원
		계	1,800원

[별표 8]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2조제2항 관련)

업종	구분	감면비율(%)	
		중수도	재이용수
가정용		20%	20%
일반용		20%	20%
대중탕용		20%	20%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지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6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검사일자)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 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							수수료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조례 제1138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관람료 징수 등)”을 “(관람료 · 체험료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구석기 시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험료는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징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및 감면 사항 등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u>관람료 징수 등</u>)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3조(<u>관람료·체험료 징수 등</u>)</p> <p>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시장은 박물관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구석기 시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체험료를 다르게 징수 할 수 있다.</u></p> <p>③ <u>시장은 제2항의 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및 감면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u></p>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조례 제1139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단 체 숙박동	개 별 숙박동
1.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2. 수학 여행단 (기준정원 30명 이상)	20퍼센트	
3.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30명 이상)	20퍼센트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20퍼센트	20퍼센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 3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6.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센트	20퍼센트
7. 「공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공주시 명예시민인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8.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된 사람 중 온누리공주시민증을 제시한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9. 「백제생활권 관광시설 공동이용사업 협약서」에 의하여 부여군·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센트	20퍼센트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조례 제1140호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
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조례 제1141호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을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수탁의 취소)”를 “(위탁의 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2제3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의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탁운영) ①·② (생략)</p> <p><u>③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는 위탁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 담보, 기타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u></p> <p><u>④ 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u></p> <p>⑤ (생략)</p> <p>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p>	<p>제7조(위탁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u> <u>2. 위탁계약기간</u> <u>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u> <u>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u> <u>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u>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u> <u>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u> <u>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p><u>④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④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 ⑦ (생략)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아 구조 변경 시 준공과 동시에 공주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 해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⑤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수탁의 취소) ① 시장은 제10조와 다음의 각 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한 때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하였을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생략)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7조2제3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조례 제1142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효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에 발생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거리의 특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16호, 2014.3.24 일부개정] 부칙 제8조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 건축물(기존건축물의 범위내에서 기존대지 및 인접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별표1의 일부제한 구역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재·개축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하여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제4조(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시장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u>3년</u>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u>〈신 설〉</u></p>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5년----- ----- ---.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효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에 발생한다.</p>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전 부 제한구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 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은 신규 입지는 허용하지 않음)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일 부 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 이외의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제한구역의 도시지역의 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제한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700m 이하 지역 - 소, 젃소 : 1,000m 이하 지역 -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 : 500m 이하 지역

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응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조례 제1298호

공주시 응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응진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응진문화상 조례”를 “공주시 응진문화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주시응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공주시
응진문화대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상”을 “공주시 응진문화대상(이하 “응진문화대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진문화상”을 “응진문화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주시응진문화상심사위원회”를 “공주시 응진문화대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응진문화상”을 “응진문화대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공주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시를 시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업무담당주사가”를 “시정업무 팀장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공주시 응진문화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개발, 지역문화발전,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의 순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u>공주시응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수상대상) <u>문화상</u>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특히 우수한 연구, 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선양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p> <p>1.·2. (생략)</p> <p>3. 공주시에 <u>본적을 두고</u>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특별상 수상 요건을 갖춘 자</p> <p>제3조(수상부문등) ①<u>응진문화상</u></p>	<p><u>공주시 응진문화대상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공주시 응진문화대상</u> ----- ----- -----.</p> <p>제2조(수상대상) <u>공주시 응진문화대상(이하 “응진문화대상”이라 한다)</u>-----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등록기준지를</u> ----- ----- -----</p> <p>제3조(수상부문등) ① <u>응진문화대</u></p>

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4조(위원회) ①문화상 수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웅진문화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의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부문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각각 위촉한다. 이 경우 수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자는 제외한다.

⑤ (생략)

제7조(수상자 추천) ①수상후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

상_____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①-----
-----공주시
웅진문화대상심사위원회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수상자 추천) ①-----

-----.

<p>1. · 2. (생 략)</p> <p>3. <u>웅진문화상을</u> 받은 자</p> <p>4. · 5. (생 략)</p> <p>② ~ ⑥ (생 략)</p> <p>제8조(시상) ①문화상은 시민체육 대회 개최 일에 시민을 대표하여 <u>공주시장이</u>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u>시</u>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p> <p>②간사는 시정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u>행정업무담당주사가</u> 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웅진문화대상</u>-----</p> <p>4.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시상) ①----- ----- -----<u>시장</u>-----. -----<u>시기</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정업무 팀장이</u> ---- -----.</p>
--	--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규칙 제525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공주시 세무과장(이하 “세무과장”이라한다)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세무과장은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세무과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

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8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9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세무과장은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 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공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99호 서식)”
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 별지 제426호 서식)으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을 “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을 “ 「지방세기
본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공주
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
으로 본다.

별지서식 목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2	송달부(직접교부)	
3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4	송달불능부	
5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6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7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8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9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군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구·군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금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책호 기본	세목 번호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남 연월일	사유	담 당 자	팀 장	과 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금 가산금		총 당 경 정	명 령 번 호	지 급 명 령 액	담 당 자	팀 장	과 장	일 자	수 령 자	대 조 자 인
				계	분 세	가 산 금	성 명							주 소	지 방 세 환 급 금									
	월계																							
	연도계																							
	총 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총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재	
									담당자	과장
전월까지 누계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 전신처리하는 경우 전신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 × 257mm(백상지 80g/m²)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인)				
과장	지	방	세	환	급	(인)				
팀장	정	리	부	등	재	(인)				
담당자	총	당	통	지	서	(인)				
통	지	서	번	호	년	(인)				
년	월	일								
총당금액 (금 _____ 원) (₩ _____)										
세 입 항 목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 당 내 역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총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규칙 제526호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시세 징수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
정된 공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
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세무과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한다.

③ 세무과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세무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세무과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날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세무과장은 수납기관에서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과장은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소인) 세무과장은 수납기관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세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세입마감) 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과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4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이 고액·상습체납

자 명단공개 심의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에 따른다.

제1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 인적사항(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결손처분)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②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보요구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제공된 자료를 다른 정보요구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중 하나의 정보요구기관에만 제1항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제공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

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
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 지 서 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2	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3	세입(징수,감액,결손) 결정액 통지서	
4	수납부	
5	징수부	
6	세목별 체납액 징수부	
7	이월 체납액 정리부	
8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9(갑)	결손처분표	
9(을)	결손처분표	
10	지방세 체납자 정보공개 심의요구서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left: 2px solid black; border-right: 2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결손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p>결정결의서</p> </div> </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 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시	년시 세입		
	항목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시(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	
적요	년 시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시 []

세입연시·군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시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체납자 주소지 약도							
2. 조치												
3. 처리전망												

210mm×297mm(백상지 80g/㎡)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팀장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p align="center">주거 확인</p>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p align="center">재산 확인</p>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p align="center">생활상태 확인</p>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p align="center">재조사 확인</p>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시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분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규칙 제527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단위 : 명)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총 계	998(3)	531(1)	17	169	52	229(2)	22(1)	131	76(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958(3)	522(1)	17	138	52	229(2)	22(1)	131	76(1)
3급 소계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 소계	6	3	1	2					
지방기술서기관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4	3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51	26	2	4	3	16	1	9	6
지방행정사무관	7	7							
지방의무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지방행정·공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5	11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1					1			1
지방행정·사서·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8					8		8	
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사무관	3	3							
지방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5					5	1		4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사무관	1					1			1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6급 소계	250	149	3	38	14	46	5	28	13
지방행정주사	72	52	2		5	13	1	7	5
지방세무주사	2	2							
지방사회복지주사	5	5							
지방농업주사	2			2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시설주사	12	12							
지방보건진료주사	12			12					
지방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세무주사	6	5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8	4			1	13	2	7	4
지방행정·전산주사	2	2							
지방행정·사서주사	2				2				
지방행정·공업주사	8	5			3				
지방행정·농업주사	10	2		4		4		2	2
지방행정·녹지주사	4	4							
지방행정·보건주사	4	2		2					
지방행정·환경주사	4	4							
지방행정·시설주사	30	27	1		1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1			1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2			2					
지방보건·간호주사	4			4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4					4	1	2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5	2				3		3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2	2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3	3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13	4		1	1	7	1	6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간호·보건주사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4					
지방운전주사	2	2							
지방위생주사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	1			1					
지방전기운영주사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7급 소계	288	173	4	37	14	60	5	34	21
지방행정주사보	73	53	3	2	3	12	2	3	7
지방세무주사보	7	7							
지방전산주사보	3	2		1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9	7				12		6	6
지방사서주사보	4				4				
지방공업주사보	7	5		1	1				
지방농업주사보	3			3					
지방녹지주사보	3	3							
지방수의주사보	3			3					
지방보건주사보	2			2					
지방보건진료주사보	3			3					
지방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주사보	3	3							
지방시설주사보	26	25		1					
지방방송통신주사보	3	2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6	6							
지방행정·세무주사보	13	4				9	1	5	3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14	6				8	1	6	1
지방행정·사서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8	5	1		2				
지방행정·농업주사보	16	1		2		13		11	2
지방행정·녹지주사보	5	4				1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2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2							
지방행정·시설주사보	21	16			1	4	1	2	1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1	1							
지방공업·환경주사보	3	3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2			2					
지방농업·수의주사보	3	1		2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녹지·시설주사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3			3					
지방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시설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3	3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	3	2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식품위생주사보	2			2					
지방운전주사보	5	5							
지방위생주사보	2			1		1			1
지방시설관리주사보	1	1							
지방전기운영주사보	2				2				
지방기계운영주사보	2	1		1					
지방역과리우역주사보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8급 소계	225	117	3	42	5	58	5	35	18
지방행정서기	45	25	3		1	16	2	7	7
지방세무서기	10	10							
지방사회복지서기	13	4				9	1	7	1
지방사서서기	1				1				
지방공업서기	5	2		2	1				
지방농업서기	4			4					
지방녹지서기	2	2							
지방보건서기	4			4					
지방보건진료서기	3			3					
지방의료기술서기	8			8					
지방환경서기	2	2							
지방시설서기	17	10			1	6		6	
지방행정·전산서기	2	1		1					
지방행정·세무서기	9					9	1	4	4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3	9				4		3	1
지방행정·사서서기	1				1				
지방행정·공업서기	7	7							
지방행정·농업서기	8	2		1		5	1	2	2
지방행정·녹지서기	2	2							
지방행정·보건서기	3					3		3	
지방행정·환경서기	1	1							
지방행정·시설서기	21	16				5		3	2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2			2					
지방보건·간호서기	8			8					
지방의료기술·간호서기	2			2					
지방환경·시설서기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2	2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3	2		1					
지방행정·농업서기·농촌지도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서기	1			1					
지방행정·보건·환경서기	1			1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서기	1	1							
지방행정·시설·해양수산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서기	2			2					
지방운전서기	7	7							
지방위생서기	2	1				1			1
지방전기운영서기	1	1							
지방기계운영서기	3	3							
지방열관리운영서기	1			1					
지방사무운영서기	2	2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9급 소계	137(3)	53(1)	4	15	16	49(2)	6(1)	25	18(1)
지방행정서기보	24(3)	8(1)		1		15(2)	2(1)	8	5(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0	2				8	2	2	4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공업서기보	2	1			1				
지방농업서기보	2			1		1		1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2			2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2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4					4		3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8	1				7		2	5
지방행정·사서서기보	1				1				
지방행정·공업서기보	3	1			2				
지방행정·농업서기보	5					5		5	
지방행정·보건서기보	1			1					
지방행정·환경서기보	3	3							
지방행정·시설서기보	8	6		1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시설서기보	1	1							
지방사서·공업서기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3			3					
지방행정·공업·시설서기보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보	1					1		1	
지방행정·농업·방재안전서기보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보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서기보	1			1					
지방속기서기보	2		2						
지방운전서기보	23	17	1	2	3				
지방위생서기보	7	1		1	1	4		2	2
지방시설관리서기보	1				1				
지방건축운영서기보	1	1							
지방통신운영서기보	1		1						
지방기계운영서기보	1					1	1		
지방사무운영서기보	9	3		2	3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연구직 계	7	6		1					
지방학예연구사	4	4							
지방기록연구사	1	1							
지방농업연구·녹지연구사	1			1					
지방기록연구사·행정주사보	1	1							
지도직 계	30			30					
지도관 소계	3			3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사무관	2			2					
지방농촌지도관·농업사무관	1			1					
지도사 소계	27			27					
지방농촌지도사	23			23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보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보	1			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공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8. 29.)
에서 의결된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규칙 제528호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팀 배치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8일

공주시 훈령 제267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팀 배치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팀 배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주시 본청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구분	계	담당관						시민국										안전산업국										미래도시사업단			
		소계	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미디어담당관	광사담당관	소계	사회	복지	시민봉사	회계	세무	문화관광	문화재	교육체육	소계	안전관리	기업경제	건설	산림	도시정책	허가	교통	환경자원	수도	토지	소계	창조도시	정책사업	
총계	581(1)	91	23	20	15	17	16	178(1)	25	24(1)	19	21	29	21	19	17	235	26	19	21	19	16	25	21	44	25	19	30	17	13	
경무직 계	1	1	1																												
시장	1	1	1																												
일반직 계	582(1)	86	23	17	13	17	16	178(1)	25	24(1)	19	21	29	21	17	17	235	26	19	21	19	16	25	21	44	25	19	28	15	13	
3급 소계	1	1	1																												
지방부이사관	1	1	1																												
4급 소계	3							1	1								1	1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3							1	1								1	1									1	1			
5급 소계	26	5	1	1	1	1	1	8	1	1	1	1	1	1	1	1	11	1	2	1	1	1	1	1	1	1	1	1	2	1	1
지방행정사무관	7	3	1	1	1			3			1	1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1	1																					
지방행정·공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복지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1	1					1	3						1	1	1	5	1		1		1	1				1	2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사무관	3																3								1	1					
지방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관	1	1				1																									
6급 소계	149	28	7	6	4	6	5	46	6	6	5	5	7	6	6	5	65	8	6	6	5	6	5	6	11	6	6	10	5	5	
지방행정주사	52	18	6	4	4	1	3	20	1	1	4	4		4	3	3	10	2	2	1				2	1	1	1	4	2	2	
지방세무주사	2							2					2																		
지방사회복지주사	5							5	3	2																					
지방복지주사	3																3				3										
지방시설주사	12							1						1			11	1		2		2	2			2	2				
지방환경주사	2																2								2						
지방행정·세무주사	5							5					5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4							4	1	3																					
지방행정·전산주사	2	2				2																									
지방행정·공업주사	5							1		1							4		1				2	1							
지방행정·농업주사	2	1			1												1	1													
지방행정·복지주사	4							1						1			3				2	1									
지방행정·보건주사	2	1					1										1									1					
지방행정·환경주사	4																4		1						3						
지방행정·시설주사	27	2	1				1	5					2	1	2		14	3	2	2		3	1			1	2	6	3	3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2	1		1				1	1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1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2																2							2							
지방행정·공업·보건주사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3							1		1							2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4	1		1													3	1		1											
지방행정·복지·시설주사	1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1																1								1						
지방안전주사	2	1				1											1							1							
지방전기운영주사	1																1														
7급 소계	173	39	10	7	6	9	7	52	8	6	4	8	11	5	4	6	75	9	6	10	5	5	11	5	7	8	9	7	4	3	
지방행정주사보	53	23	8	6	6	2	1	17	1		3	2	2	4	2	3	11	3	2	1				2	1	1	1	2	1	1	
지방세무주사보	7							7					7																		
지방전산주사보	2	1				1		1				1																			
지방사회복지주사보	7							6	3	3							1					1									
지방공업주사보	5							2			1				1		3		1							2					
지방복지주사보	3																3				3										
지방환경주사보	3																3														
지방시설주사보	25	1					1	2						1			21	2	1	4		3	5		1	5	1		1		
지방방송통신주사보	2	2				2																									
지방행정·전산주사보	6	4				3	1	1									1	1									1				
지방행정·세무주사보	4	1	1					3			1	2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6	1					1	5	3	2																					
지방행정·사서주사보	1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5	1				1		1		1							3						2		1						
지방행정·농업주사보	1																1						1								
지방행정·복지주사보	4																4				2	1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2									2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6	1					1	2			1						9	1	1	2											

구분	계	담당관					시민국									안전산업국									미래도시사업단					
		소계	기획운영	시정운영	인사운영	미디어담당	감사담당	소회과	사회복지	시민봉사	회계과	세무과	문화관광	문화재	교육체육	소계	안전관리	기업경제	건설과	산업과	도시정책	허가통과	교통	환경자원	수도	토지	소계	창조도시	정책사업	
지방공업·환경주사보	3														3															
지방농업·수익주사보	1	1					1																							
지방복지·시설주사보	1														1	1														
지방환경·시설주사보	1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3														3	1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	2							2	1	1																				
지방안전주사보	5	2	1	1				1			1				2			2												
지방시설관리주사보	1														1							1								
지방기계운영주사보	1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1							1			1																			
8급 소계	117	11	3	3	2	3	51	5	8	7	4	10	8	4	4	50	5	5	3	5	3	6	7	8	6	2	5	2	3	
지방행정서기	25	5	2	2	1		16			3	3				3		2				1					1		1		
지방사무서기	10						10					10																		
지방사회복지서기	4						4	1	3																					
지방공업서기	2														2			1	1											
지방복지서기	2														2				1		1									
지방환경서기	2														2							2								
지방시설서기	10						1							1	8			2		1	1			2	2	1	1			
지방행정·전산서기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9	1					1	8	3	4					1															
지방행정·공업서기	7							3		2				1	4	1	2					1								
지방행정·농업서기	2	1					1								1						1									
지방행정·복지서기	2														2				2											
지방행정·환경서기	1														1						1									
지방행정·시설서기	16							3		1				2	10		1			2	2	3		2		3	1	2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1						
지방환경·시설서기	1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2							1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2	1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	1														1	1														
지방행정·복지·시설서기	1														1					1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서기	1														1	1														
지방행정·시설·해양수산서기	1							1							1															
지방안전서기	7							1		1					6							2	4							
지방위생서기	1	1			1																									
지방전기운영서기	1							1						1																
지방기계운영서기	3														3	1														
지방사무운영서기	2	1					1	1		1																				
9급 소계	58(1)	2	1			1	15(1)	4	3(1)	2	3		1	2	33	2		1	3	1	2	2	17	4	1	3	2	1		
지방행정서기보	8(1)	1	1				5(1)		1(1)	2	1		1		2						1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2							2	2															1						
지방공업서기보	1														1									1						
지방복지서기보	1														1				1											
지방환경서기보	2														2								2							
지방시설서기보	1														1										1					
지방행정·사무서기보																														
지방행정·전산서기보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1							1	1																					
지방행정·공업서기보	1														1							1								
지방행정·환경서기보	3														3								2	1						
지방행정·시설서기보	6							1			1				2	1				1						3	2	1		
지방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서기보	1							1		1																				
지방사회복지·시설서기보	1							1		1																				
지방행정·농업·방재안전서기보	1														1	1														
지방행정·복지·시설서기보	1														1					1										
지방안전서기보	17							1		1					16				1	1				13	1					
지방위생서기보	1							1																						
지방건축운영서기보	1														1							1								
지방사무운영서기보	3							2	1						1	1								1						
연구직 계	6	2			2		2							2												2	2			
지방학예연구사	4							2																			2	2		
지방기록연구사	1	1				1																								
지방기록연구사·행정주사보	1	1				1																								
별정직 계	2	2		2																										
6급 상당 소계	1	1		1																										
비서요원	1	1			1																									
7급 상당 소계	1	1		1																										
비서요원	1	1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운영 방법과 이용료, 운영위원회 설치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성 질환의 정의 삽입(안 제3조제1항)
- 명칭(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공주 환경성 건강센터)(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삽입(안 제5조제1항)
- 운영위원 임기(3년 → 2년) 변경(안 제7조제4항)
- 운영위원회 회의(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삽입(안제7조제5항)
-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신설(안 제9조제4항)
- 이용료 징수기준 삽입(별표)(안 제11조제1항)
- 보험가입 신설(안 제12조)
- 일정기간 동안 시범 운영 신설(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보건소 건강과(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23(교동) / 우편번호 : 32542

- 전화 : 041) 840-8592, FAX : 041) 840-234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운영 조례”를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131-2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2.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와 기능)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2. 환경성질환 검사·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3. 환경성 건강센터의 홍보
4.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센터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년 1월 31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 시행에 필요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의료인의 배치)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교육·검사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을 배치한다.

제7조(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안전산업국장

2. 보건소장

3. 기획담당관

4. 환경·보건·복지에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경성 질환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

2. 센터 프로그램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9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보건법」 제26조의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환경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관련법에 따라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환경전문기관의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제11조(이용료 등) ① 시설의 이용에 대한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예약취소 등으로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평가) ① 위원회에서는 연 1회 센터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 사항을 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운영계획을 전 연도 1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운영의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시범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 표 1]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이용료(제11조 관련)

1. 회의실 이용

(단위 : m², 원)

구 분	면 적	기 준	요 금	비 고
대회의실	252m ²	오전	70,000	1.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1:00 2. 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액 100분의 20을 가산 3. 토·일·공휴일은 기준액100 분의 20을 가산
		오후	80,000	
		야간	90,000	
		1일	200,000	

2. 힐링 프로그램 참가비

(단위 : 원)

구 분		계	프로그램 참가비	식 대	비 고
기본 프로그램	어린이	17,000	10,000	7,000	
	성인	22,000	15,000	7,000	
체험형 프로그램	어린이	22,000	15,000	7,000	
	성인	27,000	20,000	7,000	

비고

가. 상기 금액은 기본교육프로그램의 이용료를 말한다.

나. 프로그램 참가비 중 전문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세부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이용료 환급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p>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p>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p>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전액 환급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장 총칙</u></p>	<p><u><삭 제></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u>환경보건법</u>」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u>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u>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공주 환경성 건강센터</u>----- ----- -----.</p>
<p>제2조(명칭) 명칭은 <u>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u>(이하 “<u>센터</u>” 라 한다)로 한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u>공주 환경성 건강센터</u>(이하 “<u>센터</u>” 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u>공주시 수원지공원길 131-21</u>에 둔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이용자</u>”란 <u>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u>를 말한다.</p> <p>2. “<u>이용료</u>”란 <u>운영자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u></p>	<p>제3조(정의) ----- 뜻은 -----.</p> <p>1. “<u>환경성질환</u>”이란 <u>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u>으로서 「<u>환경보건법</u>」 제9조에 따른 <u>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u>을 말한다.</p> <p><u><삭 제></u></p>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위탁자”란 센터의 소유권자로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센터를 운영·관리하기로 위탁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6.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와 기능)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삭 제>

<삭 제>

2. -----
--- 사람을 -----.

3. -----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의 -----.

제4조(업무와 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 검사·관리-----

3. 환경성 건강센터의 홍보
4. ----- 예방·관리-----

제5조(운영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유해인

등의 특정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은 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검토·평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의료인 고용 및 업무)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환경성질환 전문 의료인을 주 3일 이상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이용자에게 환경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으며, 질환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보건법」 제26조의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운영

자가 환경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센터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주시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31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 시행에 필요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의료인의 배치)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교육·검사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을 배치한다.

<삭 제>

제7조(운영원칙) ① 센터는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다른 지역 이용자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된 물품만을 판매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술과 담배 등)은 심의에서 제외 한다.

<신 설>

제7조(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안전산업국장

2. 보건소장

3. 기획담당관

4. 환경·보건·복지에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경성 질환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
리를 위해서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
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
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있을 경우 소집한
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
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
영 성과 평가
2. 센터 프로그램의 개설 및 폐지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산업국장, 보건소장, 기획담당관, 환경자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원 중 의료인의 수를 3명으로 구성한다.

1. 환경성질환 전문의
2.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인정 받은 사람
3. 환경·보건·복지에 관련된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4. 그 밖에 환경성 질환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
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2.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 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 평가
4. 시장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신 설>

제9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보건법」 제26조의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환경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신 설>

<신 설>

제10조(관리·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환경보건법에 따라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할 때에는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이나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관련법에 따라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환경전문기관의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제22조 및 공주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운영비에 사용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

제11조(이용료 등) ① 시설의 이용에 대한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 이라 한다)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운영 재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충당할 수 있다.

1. 지방비
2.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
3. 단체, 기업 등의 후원금품, 기부금품 등
4. 시장은 센터의 운영·관리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프로그램 이용료) ① 시장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예약취소 등으로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계획)① 위원회에서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종류 선정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숙박시설 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숙박을 원할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한옥마을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체험·상담·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2일 이상 머무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행한 가족

3. 그 밖에 제1호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 중 숙박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숙박시설의 이용료는 각 시설의 이용료 규정을 따른다.

연 1회 센터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 사항을 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신 설>

<신 설>

제3장 보칙

제15조(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당해 연도 운영성과를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보고서 및 문서 등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관련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있는 경우에는 개선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운영계획을 전 연도 1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위탁자가 제1항의 요구사항을 위반 할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 제18조 (생략)

제15조 · 제16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공주시 공고 제2017-1549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하수도법」)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의 부담 완화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전면개정하면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사비용의 산출 기준과 방법 제시 (안 제3조)
-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 하수배출량 산정 방법 및 사용량 조정 세부기준을 마련 (안 제4조 및 제5조)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을 명확히 제시 (안 제6조 내지 제9조)
- 사용료 체납금액에 대한 연체가산금 규정을 삭제하고, 납입독촉 조항 신설(안 제10조)
- 그 밖에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안 제11조)과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등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9. 29.(월)까지 공주시장(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수도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621 FAX : 041-840-233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시행규칙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수도과 하수도팀(전화 041-84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시 사용신고) ①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일시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공사비용의 산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단가·물가정보 등에 의한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1조제2호의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기간으로 산정한다.(1개월 사용량=단위시간당 출수량×1개월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 사용량=단위전력당 출수량×펌프효율×1개월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 사용량=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1개월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 우물,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자는 업종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가구당 기본하수량 10세제급미터를 월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의 단위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게 한함)으로 인정한다.

제5조(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급수시설에서 급수한 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이 아닌 벽체 속 관 노후나 지하부분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물탱크자동개폐장치 고장 및 욕조, 변기 등의 누수는 사용량으로 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의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제7조(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1년 미만: 100분의 100
2.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70
3.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50
4.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0
5. 10년 이상: 100분의 10

②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계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부과한다.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부서는 준공 허가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의 완납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요청 또는 협약에 의하여 4회 이내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감면)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기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기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이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기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기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의 재처리수량에 해당하는 요금
6.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기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대상으로서, 감면금액 또는 감면비율은 별도로 정하여 공주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공고한다.

가.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나. 불명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의 하수처리장

라.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납입독촉) ① 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촉장은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기타 징수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제1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부,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은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 과오납금은 세출예산에서 반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2조의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4조의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3조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부칙(2017.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제6조 관련)



공주시장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8)
32552

◆ 공주시 대표 전화번호 ◆
☎1899-0088

**세외수입
고지
제**

공주교대
우편취급국
요금후납

재산세, 상하수도요금, 지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 「간단e납부」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기, 인터넷뱅킹, 워크스에서 통장, 현금·체크카드, 신용카드(모인트 포함)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납부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은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통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과 징수금이 권한범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제정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사**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공주시
O C R**

납부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 지 번 호

(납부자보관용)

번호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과대상:

납부 기 한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부과내역
세외수입			
합계금액			
총계납금액			

* 이 중 납기내 금액은 별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기후 금액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납부기한: 5년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공주시  수납인

**충청남도공주시
O C R**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세외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납기내 금액	납기후 금액	합계금액
* 이 중 납기내 금액은 별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기후 금액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납부기한: 5년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공주시  수납인



**충청남도공주시
O C R**

납부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 지 번 호

(시청보관용)

세외수입

번호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과대상:

납부 기 한	납기내 금액	납기후 금액	부과부서
세외수입			
합계금액			

* 이 중 납기내 금액은 별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기후 금액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납부기한: 5년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공주시장 귀하  수납인

[별지 제4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통지서(제11조제2항 관련)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반환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 호	년도 하수도 회계	공주시하수도 공기업출납원	제 호	년도 하수도 회계	공주시하수도 공기업출납원	제 호	년도 하수도 회계	공주시하수도 공기업출납원	제 호	년도 하수도 회계	공주시하수도 공기업출납원
채 주			채 주			채 주			채 주		
금	원	일정	금	원	일정	일금	일정	일금	일금	일정	일정
₩	₩	₩	₩	₩	₩	₩	₩	₩	₩	₩	₩
단			단			단			단		
년 월 일 발행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상기 금액의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계			공주시하수도공기업출납원 (인)			공주시하수도공기업출납원 (인)			공주시하수도공기업출납원 (인)		
팀 장		공주시 하수도사업 출납취급 사용기관 귀하		공주시 하수도사업 출납취급 사용기관 귀하		공주시 하수도사업 출납취급 사용기관 귀하		공주시 하수도사업 출납취급 사용기관 귀하		공주시 하수도사업 출납취급 사용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기업출납원		기업출납원		기업출납원		기업출납원		기업출납원	
관	항	세항	관	항	세항	관	항	세항	관	항	세항
목			목			목			목		

과오납금 반환청구서(제11조제4항 관련)

과 목				납 기		납입년 월 일	
관	항	세항	목				
				기 납부액		정당요 납부액	
				과오 납금		반환 가산금 계산 일수	
				반환 가산 금액		납입자 성명	
				납입자 주소			
<p>사유</p>							
<p>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청구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5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청구자 주소 :</p> <p style="margin-left: 150px;">성명 :</p>							
<p>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margin-left: 15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공주시 하수도 공기업출납원</p>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제4조제2항 관련)

구 경		최 대 출수량 (m ³ /분)	표준출수 (m ³ /분)	1시간당 출수량	
m/m	인치 (inch)			최 대 (m ³ /시간)	표 준 (m ³ /시간)
20	3/4	0.03	0.025	1.8	1.5
25	1	0.05	0.05	3.6	3
32	1-1/4	0.1	0.08	6	4.8
38	1-1/2	0.15	0.13	9	7.8
50	2	0.26	0.2	15.6	12
65	2-1/2	0.45	0.3-0.4	27	18-24
70	3	0.62	0.5-0.53	37.2	30-31.8
100	4	1.20	0.35-1.1	72	51-66
125	5	1.93	1.4-1.7	114	84-102
150	6	2.70	2.1-2.6	262	126-156
175	7	3.80	3.3	228	198
200	8	5	4-4.3	300	240-258
250	10	8	6-7.5	480	360-450
300	12	10	9-11	720	540-660
350	14	12	14	960	840
400	16	16	17-20	1,260	1,020-1200
450	18	18	25	1,620	1,500
500	20	20	30	1,980	1,800

「공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범위 내에 「국민건강증진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명은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 근거에 맞게 개정 (안 제1조)

-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상위법 근거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체화 (안 제2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함
- 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관련사항 준수 (안 제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8 ~ 9. 29.(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보건소 보건과(보건행정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23. (교동) / 우편번호 : 32542

- 전화 : 041) 840-8752, FAX : 041) 840-2341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공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중” 을 “위원 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를 “사람”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단체의 임직원” 을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u> <u>설치·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능)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u></p> <p>1. ~ 4. (생략)</p> <p>5. <u>삭제</u></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u> <u>설치·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지역보건법」 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u> ----- ----- ----- <u>보건의료</u> <u>심의위원회</u>----- ----- -----.</p> <p>제2조(기능) ① <u>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u></p>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관내 학교보건 관계자, 단체의 임직원
3. ~ 5. (생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공주시 건강생활실천협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
위원 중 -----.

③ -----
- 사람 -----
-.

1. (현행과 같음)
2. -----,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사항
- 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 라. 평상시 및 재난발생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마.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청시 공동위원장이 소집
- 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안전관리과(안전정책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 840-8644, FAX : 041) 840-233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

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훈대상자 정의를 보훈단체의 개별법에서「국가보훈 기본법」으로 단일화
-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수당 및 보훈단체 수당을 인상
-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의 보훈명예수당 신설 지원하는 근거 마련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의 예우와 복지지원으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공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용어의 정의를 통합 개정【안 제2조】

- 참전명예수당(월 125천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월 75천원) 인상과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월 50천원) 신설 지급함을 개정【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사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사회과(복지기획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 840-8139, FAX : 041) 840-230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 정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을 말한다.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특수임무유공자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국가보훈대상자와”를 “국가보훈대상자 등과”로 한다.

제4조 중 “희생자·공헌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을 “국가보훈대상자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희생·공헌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위문·격려”를 “등의 위문·격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 주관”을 “공주시 주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업적”을 “등의 업적”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를 “보훈단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복지지원 등)”을 “(복지지원 및 명예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입장료,”를 “공공 시설물의 사용료 · 입장료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등”을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무료배부”를 “무료 배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중 저소득”을 “등 중 저소득층”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호 중 “시가”를 “시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별표 1과 같이 참전명예수당,장제비,특별위로금,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상자는 공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중 “희생자·공헌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명예수당 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7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을 “제7조제2항의”로, “지급받고자”를 “받고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의**”를 “**제7조제2항의 별표의 참전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1항제7호**”를 “**제7조제2항의 별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희생자·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p> <p>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p> <p>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p> <p>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p> <p>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p> <p>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 정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을 말한다.</p> <p>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p>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전몰군경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게 해당하는 사람

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특수임무유공자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8. 전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9. 순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순직군경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0. 공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상군
경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보훈처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
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
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
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공주시민
(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희생
자·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
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
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공주
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을 하
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 략)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

제4조(시민의 책무) -----
----- 국가보훈대상자 등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

-----.

1. (현행과 같음)

2. 기념일 등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보훈가족 표창 및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
5. (생략)
6.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7. (생략)
8.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 업적 선양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7조(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2. ----- 국가보훈대
상자 등을 -----

3. -----
----- 국가보훈대상자 등
--
4. -----
----- 등의 위문
· 격려
5. (현행과 같음)
6. 공주시 주관-----

7. (현행과 같음)
8. -----

등의 업적 --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 보훈
단체-----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복지지원 및 명예수당 등) ① --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

1. (생 략)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생 략)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
5.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인 사람(생활등급 9 ~ 12등급)에 대한 위문,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장제비 및 의료비 지원 등(개정 2008.11.14.
7.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월 100천원), 장제보조비(150천원) 및 특별위로금(매년 생일이 속하는 달 30천원) 지원. 다만,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지원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8.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월 50천원) 지원. 다만,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

1. (현행과 같음)
2. ----- 공공 시설물의 사용료 · 입장료 · --
3. (현행과 같음)
4. 국가보훈대상자 등-----
--- 및 -----
5. ----- 무료 배부
6. ----- 등 중 저소득층---

<삭 제>

<삭 제>

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9.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독립유공자 지원수당(월 50천원) 지원. 다만,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사람으로 한다.

10. 시가 직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신 설>

② (생략)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자·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삭 제>

7. 시에서

②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별표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장제비, 특별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상자는 공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 국가보훈대상자 등-----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시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
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
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
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제10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 제7
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
른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 중 해당 신청서를
읍장·면장·동장을 경유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3.11.8.]

② ~ ④ (생략)

제11조(장제보조비) ① 시장은 참전
유공자의 장제보조비 지급편의를
위해서 반기마다(6월·12월) 국가
보훈처의 장제보조비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제보
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
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
내에 별지 2호서식의 장제보조비

--- 국가유공자 등-----

-----.

제10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제7
조제2항의 -----
----- 받고자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장제보조비) ① ---- 제7조제
2항의 별표의 참전유공자 -----

-----.

② 제7조제2항의 별표-----

지급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별 표]

명예수당 등 지급 기준

1. 참전유공자

구 분	참전명예수당	장제비	특별위로금 (매년 생일이 속하는 달)
지급액	125,000원/월	150,000원	30,000원

2. 보훈명예수당

구 분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군상·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지급액	75,000원/월	75,000원/월	50,000원/월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금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간의 관광교류와 기반구축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공 주 시 장

금강권 관광협의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95조에 따라 금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간의 관광 교류와 기반 구축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업무 협의와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금강권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협의회 회원은 금강을 연계하는 공주시, 군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익산시의 자치단체장으로 한다.

② 회원의 추가 구성은 회원 전원이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③ 협의회의 표기방법은 “가·나·다 순” 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① 관광지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②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및 시·군간 업무 조정
- ③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현안 정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 ④ 기타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등) ①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시·군에 둔다.

- ② 협의회에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자료는 협의회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임원의 구성 등) ① 회장은 정례회에서 호선한다.

- ② 임원은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각각 구성한다.
- ③ 협의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④ 사무국은 회장의 자치단체에 두며, 사무국장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당 부자치단체장이 남은 임기동안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각종사무를 총괄한다.

- ②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재정집행을 총괄한다.

제8조(회원의 책무) ① 회원은 상부상조 및 신뢰 증진에 힘써야 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 임시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한다.

- ② 정례회는 다음해 회기년도 개시전(매년 1회)에 개최하며 회칙의 개정, 회장의 선출, 사업의 결정, 기타 중요 안건을 의결한다.
-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④ 정례회 및 임시회시 회원이 참석하지 못 할 경우 부단체장 및 관련 업무 부서장이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 ⑤ 실무협의회는 단위사업 추진 시·군에서 소집하며 사업추진 사항을 협의 한다.
- ⑥ 본 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 구성은 각 도시의 업무담당 또는 팀장(6급 상당) 및 담당자로 구성하되, 상정안건에 따라 협의회 업무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토의 안건을 사전 협의하며,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고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실무를 협의 처리하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모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결) ①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2/3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도 회장이 승인하면 정례회와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협의·결정 사항의 효력) 회원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4조(수입) ① 협의회는 수입금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분담금은 연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회비는 협의회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하며, 연회비 금액은 정례회에서 정한다.

④ 협의회는 발전을 위하여 회원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지출) ① 수입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시·군간 공동사업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1. 관광산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2. 관광객 유치에 위한 홍보활동과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군간 금강권 관광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본 회의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목적에 반하는 지출은 할 수 없다.

제16조(회계) 협의회회 회비집행 상황은 사무국장이 정례회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 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규약의 개정·폐지) ① 규약의 개정 및 폐지는 협의회 회원의 전원 참석과 참석 회원의 전원 의결로 한다.

② 협의회에서 의결된 규약의 개·폐지안은 해당되는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백제문화권 자치단체간의 관광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공 주 시 장

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의회는 명칭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협의회는 백제문화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관광상품개발과 통합홍보로 다양하고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욕구를 증대시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자치단체 상호간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협의회는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백제문화권지역의 공주시, 금산군, 무주군, 부여군, 유성구의 자치단체장으로 하며, 필요시 회원 만장일치로 백제문화권 지자체를 추가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①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홍보의 공동추진, 관광활성화에 대한 의견교환

및 방안강구

- ② 자치단체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 추진
- ③ 기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

제2장 임 원

제5조 (회장)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임기를 1년으로 한다.

- ② 회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진행을 비롯한 회의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③ 회장은 회원들이 호선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잔여 임기동안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 (사무국) ① 본 협의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회장의 자치단체에 두며 사무국장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장이 된다.

제3장 회 의

제7조 (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윤번제로 개최하며 희망 또는 협의에 의하여 차기 순번을 결정한다.
- ③ 임시회는 회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단,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회의안건은 회의개최 15일전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에서는 회의자료 일정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사무국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정기회에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하반기 정기회에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수립하여 상정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정기회 및 임시회는 필요시 회원들의 합의하에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의결)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고 대리참석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9조 (회의록 작성) 사무국장은 회의록 또는 회의 관련사항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6조 제2항의 사무국장이 된다.
- ③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회의 부의안건을 사전 협의하며,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고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실무를 협의 처리한다.

제4장 재 정

제11조 (경비부담) ① 협의회 회의 개최와 관련된 소요경비는 회의주관 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교통비와 체재비는 각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본 협의회 회의의 결정사항으로 추진하는 공동연구 조사 협력사업 등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 칙

- ① (효력발생) 본 규약은 의결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규약준용)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원간의 협의로 정한다.
- ③ (규약개정) 본 규약은 정기회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